

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 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에 관련된 사항

1. 대주주명		DB캐피탈(주)													
2. 신용공여내용	신용공여일	2024년 12월 27일													
	신용공여종류	한도약정대출													
	신용공여금액(원)	49,000,000,000													
	신용공여총잔액(원)	49,000,000,000													
	만기일	2026년 12월 26일													
	신용공여금리(%)	기타사항 참고													
3. 자금용도		본 건은 기존 거래에 대한 주요내용 변경 공시임													
4. 이사회결의일		2024년 12월 23일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은 자회사인 DB캐피탈(주)와 2022년 12월 28일 기 체결한 560억 한도약정대출에 관한 주요 내용 변경공시임 - 상기 2항의 신용공여일은 대출약정 체결일임 - 상기 2항의 신용공여금액은 대출한도임 - 대출금리: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준용하여 인출 건별로 산정 - 대출기간: 2년 <p>[주요내용 변경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기 약정</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대출방식</td> <td>한도약정대출</td> <td>한도약정대출</td> </tr> <tr> <td>신용공여액</td> <td>560억(한도)</td> <td>490억(한도)</td> </tr> <tr> <td>만기일</td> <td>`24.12.27</td> <td>`26.12.2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인출수수료([대출한도-인출누적금액]*0.2%) 부과 		구분	기 약정	변경	대출방식	한도약정대출	한도약정대출	신용공여액	560억(한도)	490억(한도)	만기일	`24.12.27	`26.12.26
구분	기 약정	변경													
대출방식	한도약정대출	한도약정대출													
신용공여액	560억(한도)	490억(한도)													
만기일	`24.12.27	`26.12.26													